

2027학년도 마이스터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1. 모집 학과 및 정원

(단위: 명)

학과	학급수	모집 정원	일반 전형	특별전형		
				마이스터 인재	봉사활동 우수자	사회통합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1 전기에너지과	4	72	44	18	4	6
2 에너지전자제어과	2	36	21	9	2	4
3 에너지기계과	2	36	21	9	2	4
4 에너지정보통신과	2	36	21	9	2	4
계	10	180	107	45	10	18

※ 모집 정원은 학교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특별전형에서 1개 학과, 일반전형에서 4개 학과까지 지망할 수 있으며 특별전형 모집인원 미충원 시 일반전형에서 충원함(2개의 전형 동시 지원 가능함).

※ 본교는 전체 모집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 추가 모집을 진행하지 않음.

※ 본교는 예비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음.

2. 모집 지역: 전국(서울특별시 외 지역은 모집정원의 42% 이내 선발)

□ 전형에 따른 지역별 모집 정원

(단위: 명)

구분	모집 인원	특별전형									일반전형		
		서울 합계	서울외 합계	마이스터인재			봉사활동우수자		사회통합		합계	서울	서울외
				서울	서울외		서울	서울외	서울	서울외			
					입소	미입소							
전기 에너지과	72	14	14	8	4	6	2	2	4	2	44	44	
에너지 전자제어과	36	8	7	4	2	3	1	1	3	1	21	21	
에너지 기계과	36	8	7	4	2	3	1	1	3	1	21	21	
에너지 정보통신과	36	8	7	4	2	3	1	1	3	1	21	21	
계	180	38	35	20	10	15	5	5	13	5	107	67	40

- ※ 중학교 재학생이 아닌 검정고시 합격자 등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의 사회통합 전형 지원 자격은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대상 자격 확인 후 지원 가능함.
- ※ 지역별 지원자가 선발인원보다 적을 경우 타지역(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외)에서 추가 선발함.
- ※ 검정고시 합격자의 지역 구분은 검정고시 관할 교육청 소재지를 따름.
- ※ 지역 구분은 지원자의 졸업(예정) 중학교 교육청 소재지를 따름.
- ※ 본교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음.
- ※ ‘서울특별시 외 마이스터 인재 전형의 기숙사 미입소 전형’이 미달인 경우 아래의 순서로 선발
 - 1) 마이스터 인재 전형의 서울특별시에서 선발함.
 - 2) 서울특별시 일반전형에서 선발함.

3. 지원 자격

가. 공통 지원 자격

- 1) 중학교 졸업예정자
- 2) 중학교 졸업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 3) 검정고시 합격자
- 4) 우리 학교의 성장경로에 대한 진로지도 정책 동의서 제출이 가능한 자

나. 전형별 지원 자격

- 1) 일반전형: 공통 지원 자격을 갖춘 자
- 2) 특별전형
 - 가) 마이스터 인재 전형: 에너지 분야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으로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나) 봉사활동 우수자 전형: 중학교 재학 기간 동안(2026. 9. 30. 마감 기준) 봉사활동 누적 시간이 50시간 이상으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다) 사회통합전형: 공통 지원 자격을 갖춘 자로 다음 자격에 따라 기회균등전형과 사회다양성전형으로 구분됨.

구분	대상자	지원 자격
기회 균등 전형	60% 이상 우선 선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근거하여 주민센터에 등록된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자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구분		대상자	지원 자격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상자로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교육지원 대상자’일 경우 보훈자 자녀 “정원 외”로 지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해당 자격은 중학교 ‘재학생’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 수준으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포함(동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또는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학교장 추천서’ 서식과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제출 대상
사회 다양성 전형 (가구 원 수별 중위소 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	1 순 위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거주자로서 해당 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
		소년·소녀가장/조손가족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이외 소년·소녀가장 또는 조손가족의 자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	순직군경, 순직소방관,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 자녀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족의 자녀(※ 자녀 모두 지원 가능)
	2 순 위	한부모가족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제5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 경우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
		군인 자녀	15년 이상 재직 중인 중령 이하 군인 자녀
		경찰(해양경찰) 자녀	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감 이하 경찰(해양경찰) 자녀
		소방공무원의 자녀	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시·도 또는 군·구 소속으로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의 자녀
		기타	선발교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신청한 유형 중 교육감이 사회통합전형 제도 도입의 원칙과 기준을 고려하여 승인한 자

※ 사회통합전형은 순위에 따른 단계별 선발을 실시 「6. 사정 방법」 참고

※ 사회통합전형의 자세한 지원 자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2027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입학 사회통합전형 추진 계획」에 따름.

다. 특별학생

1) 고입 특례대상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4호

구 분		자 격 요 건	비고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정원 내
제2호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모집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선발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다목	외국인 학생으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함)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제4호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 등	정원 내

- 2) 보훈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선발

※ 고입 특례대상자, 보훈자 자녀의 경우 본교 신입생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불합격 처리함.

4.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안내(제출서류는 추후에 변경될 수 있음)

가. 공통 서류

- 입학원서
- 성적일람표 및 확인서
- 중학교 생활기록부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사본,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유의 사항: 입학원서 사진 포함(온라인 입학원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

학교생활기록부Ⅱ 기준일 2026. 9. 30.(수)

나. 전형별 추가 서류

1) 일반전형: 공통 서류만 제출

2) 특별전형: 공통 서류 포함 전형별 추가 서류 제출

가) 마이스터 인재 전형

- 학교장 추천서(원서 작성 완료 후 온라인 원서 접수 시스템에서 자동 출력됨)
- 학업계획영상(온라인 제출)
- 마이스터 인재 전형 중 ‘서울 외 지역 기숙사 미입소 지원자’: 기숙사 미입소 확인서

나) 봉사활동우수자 전형

- 학교장 추천서(원서 작성 완료 후 온라인 원서 접수 시스템에서 자동 출력됨)
- 학업계획영상(온라인 제출)

다) 사회통합전형

- 학업계획영상(온라인 제출)
- 아래의 표에 사회통합전형 - 기회균등전형 및 사회다양성전형 지원자 ‘공통’ 제출 서류 및 지원 유형에 따른 증빙 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 및 사회다양성전형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① (지원자 본인이 포함된)주민등록등본 ② (발급기준)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단, 다음 지원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필요 -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 (발급기준) ‘부’ 또는 ‘모’ 기준 - 한부모가족: (발급기준) ‘자녀(지원자)’ 기준
		③ 부정입학 방지 보호자(법정대리인) 확인서 서식 ④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사회통합전형 학교장 확인서 서식
기회 균등 전형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수급자 증명서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다음 中 지원자 유형에 맞는 확인서 제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교육비 지원 대상자 확인서(확인서 발급사유: 기준중위소득 60% 이 하임을 확인 ■ 해당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 후 제출)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의 자녀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임을 받 드시 확인 후 추천(NEIS에서 확인 가능)

구분			제 출 서 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 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주택) 과세 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 가정위탁 보호확인서 등 ○ 학교장 추천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회의록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학교추천위원회 의견서도 포함
사회 다양성 전형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	사회 다양성 전형 공통	지역건강보험료	○ (공통)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기간: 최근 1개년 이상 포함 ○ (공통)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공통)건강·장기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고지금액 포함) ※ 단,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는 재산세(주택)관련 서류 제출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 (공통)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기간: 최근 1개년 이상 포함 ○ (공통)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공통)건강·장기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고지금액 포함) ○ 재산세(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관련 서류 ■ 주택 미소유 시 ① ‘전국 자치단체 재산세(주택)기준 과세 사실 없음’ 문구가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택 소유 시(①~③ 모두 제출) ① 재산세(주택) 부과된 내역(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② 서울 내 재산세(주택) 부과되지 않은 내역(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③ 서울 제외 재산세(주택) 부과되지 않은 내역(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순위	다문화가족 자녀	○ 부 또는 모가 귀화한 경우 귀화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지원 자격 미인정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부 또는 모가 외국 국적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중 택 1하여 제출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국내거소신고증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로 대신하여 제출 가능)

구분		제 출 서 류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 이탈 주민등록 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선정)결과통지서 사본 - (원칙) 상기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음 - (예외) ‘건강장애’, ‘정서·행동장애’, ‘정서·행동장애를 수반하는 중도중복장애’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에는 상급학교 진학 시 재선정 절차를 거치므로 ‘당해연도 발급’ 서류로 제출
	도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소년·소녀 가장/조손가족의 자녀	○ 사실 관계 확인서(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부모의 장애인 증명서 또는 부모의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	○ 순직군경, 순직소방공무원, 순직교원, 순직공무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다자녀가족 (3자녀 이상) 자녀	○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제출(건강보험료 관련 공통적용 기준 서류도 다른 사회다양성 전형과 동일하게 포함)
	한부모가족 자녀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환경미화원의 자녀	○ 재직증명서 ※ 시·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군인 자녀(중령 이하)	○ 15년 이상 재직 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증빙 대상자가 원서 접수 기간 동안 지원 대상 계급 (예: 중령, 경감, 소방경 이하)자격을 충족해야 함
	경찰(해양경찰) 자녀(경감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소방경 이하)	
	2순위	

※ 사회통합전형 국가보훈대상자 범위 및 제출서류

보훈대상자	근거	증명서류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호 및 제2호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원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3호~제18호, 제73조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원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제3호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제3호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제4호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원

※ 사회통합 전형 지원 시 유의 사항

- 지원 자격 확인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며, 원서접수 후 서류 심사과정에서 사회통합전형 지원자의 서류 미비 또는 오류가 발견될 경우, 학부모 및 지원자 동의 시 해당 지원자는 일반전형 지원자로 전환될 수 있음.

다. 특별학생

1) 고입 특례대상자

• 입학원서	• 성적일람표 및 확인서
• 중학교 생활기록부 II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고입 특례대상자 증빙자료	

2) 보훈자 자녀

• 입학원서	• 성적일람표 및 확인서
• 중학교 생활기록부 II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라. 제출 방법

1)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 접수함.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	https://sudo.myapply.kr
--------------	---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증빙서류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함.

3) 우편접수처

우편번호	0632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입학전형담당자

※ 증빙서류의 우편 제출은 원서접수 마지막일(2026. 10. 22.)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하며, 우편 제출한 지원자의 서류 도착 여부 확인은 지원자의 책임임.

※ 유의 사항

- 입학원서 사진 포함(온라인 입학원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
- 학교생활기록부 II 기준일: 2026. 9. 30.(수)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지원자는 증빙서류 원본을 각 2부씩 준비하여,

- ① 소속교(중학교 또는 관할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및
- ② 지원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서류 인정 유효기간(원서 접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을 확인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주의 단, 증빙서류 자체에 별도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예외로 함.]

5. 전형 방법

가. 일반전형

1) 평가 항목

항 목	교과성적		출결성적	봉사활동성적	마이스터 적성·소양 검사	심층면접	합계
	일반 교과 (80점)	체육·예술 (10점)					
배 점	90		30	30	90	60	300
비 율	30%		10%	10%	30%	20%	100%

2) 평가 기준

가) 교과성적

- 교과성적이란 「중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라 산출한 졸업(예정)자의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취도를 환산한 점수를 본교 교과성적 산출 공식에 따라 산출한 성적임.
※ 단, 교과성적 산출 시 소수 자릿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예정)자는 이수한 최종학년(최종학기) 성적을 100% 반영함.

(1) 일반교과 성적(80점)

항 목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합계
배 점	24	24	32	80
비 율	30%	30%	40%	100%

※ 교과 성취도 환산 점수

성취도	A	B	C	D	E
환산 점수	5	4	3	2	1

일반교과성적 산출 공식

○ 일반교과성적(80점 만점)

$$= \frac{24}{5} \text{ 점} \times \left(\frac{A_{21}}{N_{21}} + \frac{A_{22}}{N_{22}} \right) + \frac{32}{5} \text{ 점} \times \left(\frac{A_{31}}{N_{31}} \right)$$

A_{21} : 2학년 1학기 개인별 일반교과 성취도별 환산 점수의 총합

A_{22} : 2학년 2학기 개인별 일반교과 성취도별 환산 점수의 총합

A_{31} : 3학년 1학기 개인별 일반교과 성취도별 환산 점수의 총합

N_{21} : 2학년 1학기 일반교과목 수

N_{22} : 2학년 2학기 일반교과목 수

N_{31} : 3학년 1학기 일반교과목 수

(2) 체육·예술교과 성적(10점)

항 목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합계
배 점	3	3	4	10
비 율	30%	30%	40%	100%

※ 체육·예술 성취도 환산 점수

성취도	A	B	C
환산 점수	3	2	1

체육·예술교과성적 산출 공식

$$\bigcirc \text{체육·예술교과성적(10점 만점)} = \left(\frac{R_{21}}{M_{21}} + \frac{R_{22}}{M_{22}} \right) + \frac{4}{3} \text{점} \times \left(\frac{R_{31}}{M_{31}} \right)$$

R_{21} : 2학년 1학기 개인별 체육·예술교과 성취도별 환산 점수의 총합

R_{22} : 2학년 2학기 개인별 체육·예술교과 성취도별 환산 점수의 총합

R_{31} : 3학년 1학기 개인별 체육·예술교과 성취도별 환산 점수의 총합

M_{21} : 2학년 1학기 체육·예술 교과목 수

M_{22} : 2학년 2학기 체육·예술 교과목 수

M_{31} : 3학년 1학기 체육·예술 교과목 수

나) 출결성적(산출기준일: 2026. 9. 30.(수))

3년간 미인정 결석일수	0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이상
점수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19

- 3개 학년의 미인정 결석일수와 환산 결석일수를 합산하여 총 결석일수를 산출
- 미인정결과,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의 합계가 3회인 경우 환산 결석 일수 1일로 산정
(예: 4회-1일, 5회-1일, 6회-2일)
- ※ 중학교 3년간 결석 일수 11일 이상인 경우 최저점 19점을 부여

다) 봉사활동성적: 시수와 상관없이 지원자 전원 만점(30점)으로 산출

라) 마이스터 적성·소양검사

- 에너지 분야 영마이스터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종합적성검사 및 인성검사로 평가 - 평가 영역 : 언어이해력, 응용계산력, 공간지각력, 문제해결력, 인성 총 5개 영역

항 목	배 점				
	A	B	C	D	E
언어이해력	20	18	16	12	10
응용계산력	20	18	16	12	10
공간지각력	10	9	8	6	5
문제해결력	20	18	16	12	10
인성	20	19	18	10	4

마) 심층면접

- 에너지 분야 영마이스터로서의 자질과 진로 적합성을 심층면접을 활용하여 평가 반영 - 평가 영역 : 직업기초능력, 문제해결능력, 예의/예절

항 목		배 점				
대영역	세부영역	A	B	C	D	E
지원분야 이해 직업자세	직업기초능력	25	23	21	10	5
	문제해결능력	25	23	21	10	5
인성 및 태도	예의/예절	10	9	8	5	2

나. 특별전형

1) 평가 항목

항 목	교과성적		인 성		마이스터 적성·소양검사	학업 계획 영상	심층 면접	합계
	일반 교과 (80점)	체육 예술 (10점)	출결성적	봉사활동 성적				
배 점	90		30	30	90	30	30	300
비 율	30%		10%	10%	30%	10%	10%	100%

2) 평가 기준

- 가) 교과성적: 일반전형과 동일함.
- 나) 출결성적: 일반전형과 동일함.
- 다) 봉사활동성적: 일반전형과 동일함.
- 라) 마이스터 적성·소양검사: 일반전형과 동일함.
- 마) 학업계획영상

- 에너지 분야 영마이스터로서 미래비전에 대한 도전정신·올바른 가치관·긍정적 사고·봉사정신 - 본교 입학 후 에너지 마이스터로서 성장을 위한 창의성·학업 계획성을 반영
--

항 목	배 점				
	A	B	C	D	E
학업계획영상	30	28	26	13	4

바) 심층면접

- 에너지 분야 영마이스터로서의 자질과 진로 적합성을 심층면접을 활용하여 평가 반영 - 평가 영역 : 직업기초능력, 문제 해결 능력, 예의/예절

항 목		배 점				
대영역	세부영역	A	B	C	D	E
지원분야 이해 직업자세	직업기초능력	12.5	11.5	10.5	5	2.5
	문제 해결 능력	12.5	11.5	10.5	5	2.5
인성 및 태도	예의/예절	5	4.5	4	2.5	1

▶ 단계별 전형으로 전형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됨.

※ 특별전형 불합격자로 일반전형 재응시 때에는 특별전형 심층면접 점수를 일반전형에 환산 적용함.

다. 특별학생(고입 특례대상자·보훈자 자녀)

1) 고입 특례대상자 전형

- 전형방법은 일반전형에 따름
- 국내 학교에서의 성적을 반영하되 모든 학기(2학년 1, 2학기 및 3학년 1학기)의 성적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성적이 없는 학기의 직후 또는 직전 성적을 적용 반영함.
- 국내 학교의 성적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외국 학교에서 취득한 성적을 반영함.
※ 반영 교과 및 반영 방법은 본교 신입생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국내·외 학교에서의 성적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마이스터 적성 및 소양검사와 심층면접 점수를 교과성적, 출결성적, 봉사활동 성적으로 환산하여 종합 성적을 산출할 수 있음.

2) 보훈자 자녀 전형

- 전형방법은 일반전형에 따름.

라. 검정고시 합격자 성적 산출 방식

- 1) 성취 등급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증명서」를 기준으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의 교과 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지침에 따라 평정함.

항 목	성취도별 환산 점수				
원점수	90이상~100이하	80이상~90미만	70이상~80미만	60이상~70미만	60미만
성취도	A	B	C	D	E
환산 점수	5	4	3	2	1

- 2) 교과성적(90점)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의 시험과목 전체 성적(30점)과 마이스터 적성·소양검사의 검사 성적(60점)을 합산하여 반영함.

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의 시험과목 전체 성적을 3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함.

나) 마이스터 적성·소양검사의 전체 성적을 6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함.

- 3) 출결 성적은 기본점수 19점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의 시험과목 전체 성취도 평균에 비례하여 산출함.

- 4) 봉사 성적은 시수와 상관없이 모두 만점을 부여함.

검정고시 합격자 성적 환산 공식

$$\begin{aligned} \circ \text{교과성적(90점 만점)} &= \frac{\text{성취도별 환산점수의 총합}}{\text{교과목수}} \times 20 \times \frac{30}{100} \\ &\quad + \text{마이스터 적성·소양 검사 점수} \times \frac{60}{90} \end{aligned}$$

$$\begin{aligned} \circ \text{출결성적(30점 만점)} &= 19\text{점(기본점수)} + \frac{\left(\frac{\text{성취도별 환산점수의 총합}}{\text{교과목수}} \right) - 1}{5 - 1} \times 11 \\ &\quad (\text{소수 자리수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end{aligned}$$

$$\circ \text{봉사성적(30점 만점)} = \text{시수와 상관없이 모두 만점}$$

6. 사정 방법

가. 특별전형

1) 마이스터 인재 전형, 봉사활동우수자 전형

가) 전형에 따른 학과별, 지역별 모집 정원에 따라 각 모집 정원만큼 전형 점수 합계가 높은 성적순으로 선발함.

나) 정원미달의 학과가 생기는 경우 **일반전형으로 미충원 인원을** 배정

다) 특별전형에서 불합격자 중 일반전형을 지원한 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

2) 사회통합전형

가) 1단계 선발: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를 사회통합 전형 정원의 60% 우선선발

• 기회균등전형의 지원자가 선발인원보다 적을 경우 사회다양성전형에서 추가 선발함.

나) 2단계 선발: 기회균등전형 대상자 중 1단계에서 선발되지 않은 대상자와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대상자 중 전형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선발

다) 3단계 선발: 2단계 미충원 시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 중 전형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선발

라) 사회다양성전형 미달의 경우 **일반전형으로 미충원 인원을** 배정

마) 특별전형에서 불합격자 중 일반전형을 지원한 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

※ 사회다양성 전형 중 다자녀가족 자녀는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40% 이내로 선발

나. 일반전형

1) 특별전형 합격자를 확정된 후 일반전형 합격자를 선발

2) 일반전형 학과별 지원과 관계없이 모집정원만큼 전형점수 합계가 높은 성적순으로 선발(1차 선발)

3) 1차로 선발된 학생을 제1지망의 과별 석차에 따라 학과별로 정원에 따른 지역별 모집 정원 만큼 선발함(2차 선발)

4) 1차 선발에 합격하고 2차 선발에서 불합격된 자는 제2지망에 따라 지역별 모집 정원 미달학과로 넘겨 사정·선발(3차 선발)

5) 3차 선발에서도 정원 미달의 학과가 있는 경우, 3차 선발에서 불합격된 자를 제3지망, 제4지망의 순으로 사정·선발(4차 선발)

6) 4차 선발에서도 정원 미달의 학과가 생기는 경우(예: 포기자 등)에는 1차 선발 탈락자 중 미달된 인원만큼 위 2)~4)의 방법으로 사정·선발(최종 선발)

다. 특별학생

1) 특별학생의 경우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진행

2)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신입생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

라. 동점자 처리 기준

- 동점자는 교과성적, 출결성적, 봉사활동성적, 마이스터 역량검사, 심층면접 우선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발함.

7. 전형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비 고
	일반 전형	특별 전형	
원서접수	2026. 10. 19.(월) 09:00 ~ 10.22.(목) 17:00 ※ 10. 12(월)부터 입력 가능		• 10. 12(월)부터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 이용 가능 • 제출서류 제출 방법 본교 방문 또는 우편접수 (단,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10. 22.(목) 소인분까지 유효)
입학 전형	2026. 10. 29.(목)		• 전형 지정장소 및 시간 등 일정은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별도 공지함
합격자 발표	2026. 11. 04.(수)		•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
합격자 신고 기간	2026. 11. 04.(수) 09:00 ~ 11. 10.(화) 17:00		•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 • 합격자 발표 이후 신고 가능

※ 본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권전기공업고등학교 입학전형담당자

※ 전형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원서 작성 및 각종 서식 작성은 본교 입학전형 홈페이지(<https://sudo.myapply.kr>)에서 진행함.

※ 서류 제출 방문 접수 가능 시간: 평일 09:00~17:00

8. 전형료: 10,000원(금일만원)

9. 유의 사항

가. 이중지원 금지

- 1) 전국 소재 전기고등학교 중에서 1개 학교만 지원 가능

- 과학고, 예술계고, 체육계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전기고에 지원하려는 자는 전형 날짜가 다르다 하더라도 전국 소재 전기고 중 1교에만 지원이 가능함
- 단,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에 지원하여 탈락한 자는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음

- 2) 해당 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합격자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2027학년도 전·후기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 3) 전기고등학교에 합격(합격 후 등록하지 않은 자 포함)한 자가 학교의 입학에 포기한 경우 당해 학년도에 다른 학교 지원 불가
- 나. 기재 오류 또는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책임지며, 제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다. 입학전형 관련 증빙서류는 사본을 제출함. 단 필요한 경우 원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원본은 대조 확인 후 즉시 반환함.
- 라. 전형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신입생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마. 심층면접 평가는 전형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처리하며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바. 심층면접 전형에 미응시한 학생은 불합격 처리함.
- 사. 본교는 취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졸업 후 모든 학생들의 산업체 취업을 목표로 함.
- 아. 신입생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본교의 학업이나 실습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한 자는 입학대상자에서 배제할 수 있음.
- 자. 본교는 서울 외 지역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며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본교 기숙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1) 경기도의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소재 중학교 출신 합격자는 기숙사 입소 대상에서 제외됨.
 - 2) 단, 기숙사 수용 여유가 있는 경우 경기도의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및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출신 합격자 중 원거리 통학자는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입소할 수 있음.
-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참조 및 입학처에 문의

10. 문의처

• 전화	02-524-9800(전화), 02-524-9803(FAX)
• 홈페이지	https://sudo.sen.hs.kr/
• 원서접수 사이트	https://sudo.myapply.kr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 우편번호	06324